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57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이수진 · 장종태 · 박희승
임미애 · 서미화 · 전진숙
서영석 · 이개호 · 백혜련
송옥주 · 김 윤 · 남인순
김문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에 대하여 폭넓은 피해구제를 시행하고자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추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이러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국가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런데 현행법은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보상위원회와 이를 재심하는 재심위원회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실시기관이었던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질병관리청 소속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주체였던 질병관리청이 보상심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조사 및 보상심사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까지는 보상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검토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을 설치하여 피해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원심과 재심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질병관리청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청장이”를 각각 “국무총리가”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 ①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사단의 직원은 보상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③ 조사단의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④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공무원의 파견) ① 보상위원회 위원장은 조사단의 업무수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단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사단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파견하는 공무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보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질병관리청장은”을 “국무총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질병관리청장은”을 “국무총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청장은”을 “국무총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질병관리청장은”을 “국무총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재심위원회의”를 “그 밖에 재심위원회의”로, “운영은”을 “운영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② 보상위원회 위원은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8조 중 “질병관리청장”을 “국무총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 전에 재심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제1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자는 제13조(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상위원회가 제1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은 이 법에 따른 보상위원회가 제출받은 의견으로 본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상위원회가 제11조에 따라 조사한 사실은 이 법에 따른 보상위원회가 조사한 사실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3항(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질병관리청장</u> 소속으로 <u>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u>(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원 중에서 <u>질병관리청장</u>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u>질병관리청장</u>이 위촉한다.</p> <p>1. ~ 4. (생략)</p> <p>④ ~ ⑦ (생략)</p> <p>제11조(피해조사) <u>보상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u></p>	<p>제7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① ----- ----- -----<u>국무총리</u>-----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국무총리</u> <u>가</u>----- -----<u>국무총리가</u>----- -----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11조(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 ① <u>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u></p> <p>② <u>조사단의 직원은 보상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u></p>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③ 조사단의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④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공무원의 파견) ① 보 상위원회 위원장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단에 파

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사단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파견하는 공무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보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피해보상의 결정)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

제12조(피해보상의 결정) ① 국무총리는-----

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피해보상의 결정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실과 법적근거 및 구체적인 이유(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총리령-----.

제13조(피해보상의 결정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① 국무총리는-----

-----.

② 국무총리는-----

-----.

1. 2. (현행과 같음)

③ -----

-----총리령-----
-----.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보상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

국무총리-----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무총리는-----

-----.

④ -----

총리령-----.

제15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① -----

국무총리-----

